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의 안 번 호	2717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9.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1)]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21년 8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2)] 및 「지방재정법」[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Ⅱ.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8,491억 9,400만원 보다 6.8%, 7,344억 3,800만원을 증액한 11조 5,836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현황		재원구분	
		증감액(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11,583,632	10,849,194	734,438	6.8	733,569	869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7,335억 6,9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8억 6,900만원을 포함한 총 7,344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한 바,

---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2-2〉 세입재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현황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계	추경편성	우선확정
합 계	11,583,632	10,849,194	734,438	6.8	733,569	869	△658	1,527
이전수입	11,135,224	10,395,396	739,828	7.1	738,959	869	△658	1,527
중앙정부이전수입	6,712,438	5,972,924	739,514	12.4	738,959	555	△418	973
자치단체이전수입	4,406,102	4,406,215	△113	△0.1	-	△113	△240	127
기타이전수입	16,684	16,257	427	2.6	-	427	-	427
자체수입	122,099	127,489	△5,390	△4.2	△5,390	-	-	-
지방교육채	-	-	-	-	-	-	-	-
전년도이월금	326,309	326,309	-	-	-	-	-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21. 8.18), 「2-1. 세입재원 규모」

- **일반재원**(7,335억 6,900만원)의 경우, ①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등을 반영한 **중앙정부이전수입** 7,389억 5,900만원 증액, ②공유재산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대금수입 감액분(△50억 9,0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감소분(△3억원) 등 **자체수입**을 △53억 9,000만원 감액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총 7,335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제출됨

- **목적지정재원**(8억 6,900만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으로서 ①「지방재

정법」 제45조[4] 및 예산총칙 제9조[5]에 따른 우선확정분 15억 2,700만원과 ②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기정예산액과 실제 교육부액과의 차액 조정분 △6억 5,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세출예산**은 7,344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인건비**는 ①공무원인건비 △337억 2,300만원 감액, ②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41억 9,000만원 증액, ③사립학교인건비 △360억원 감액하여 총 △655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제출하였고,

- **경상비**는 ①교육지원청 등 기관운영비 1억 5,400만원 증액, ②학교운영비 446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8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 **교육사업비**는 ①교육결손회복지원을 위한 토닥토닥키다리샘 등 11개 사업 207억원, ②취약계층맞춤지원을 위한 학교방역(운동부) 안전망 강화 등 13개 사업 744억 원, ③미래교육환경구축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전자칠판) 등 9개 사업 952억원을 증액하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등 기타 사업비 △90억원을 감액하여 총 1,812억 5,700만원을 증·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①학교환경회복을 위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구축 등 7개 사업 2,242억원, ②그린스마트스쿨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2,800억원, ③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 116억원을 증액하여 총 5,15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

4)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 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지방채상환 및 BTL상환**은 ①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577억 9,500만원, ②BTL상환 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예비비 및 기타**는 교원용 노후pc교체 및 학교무선환경 구축 사업 관련 국고반환금 1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11,583,632	100	10,849,194	100.0	734,438	6.8
인건비	계	6,299,025	54.4	6,364,558	58.7	△65,533	△1.0
	공무원인건비	4,308,707	37.2	4,342,430	6.8	△33,723	△0.8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732,971	6.3	728,781	40.0	4,190	0.6
	사립학교인건비	1,257,347	10.9	1,293,347	11.9	△36,000	△2.8
경상비	계	948,681	8.2	903,828	8.3	44,853	5.0
	기관운영비	31,639	0.3	31,485	0.3	154	0.5
	학교운영비	917,042	7.9	872,343	8.0	44,699	5.1
사업비	계	3,805,035	32.8	3,107,959	28.6	697,076	22.4
	교육사업비	2,456,944	21.2	2,275,687	20.9	181,257	8.0
	시설사업비	1,348,091	11.6	832,272	7.7	515,819	62.0
지방채 및 BTL 상환	계	425,541	3.7	367,637	3.4	57,904	15.8
	지방교육채	322,702	2.8	264,907	2.5	57,795	21.8
	BTL상환	102,839	0.9	102,730	0.9	109	0.1
예비비 및 기타		105,350	0.9	105,212	1.0	138	0.1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5조 9,729억 2,400만원) 보다 12.4%, 7,395억 1,400만원을 증액한 6조 7,124억 3,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재원구분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6,712,439	5,972,924	739,514	12.4	738,958	555	973	△4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04,107	5,364,719	739,388	13.8	738,958	429	486	△57
보통교부금	5,787,747	5,048,788	738,958	14.6	738,958	-	-	-
특별교부금	139,650	139,220	429	0.3	-	429	486	△57
증액교부금	176,710	176,710	-	-	-	-	-	-
국고보조금	33,254	33,127	126	0.4	-	126	487	△361
특별회계전입금	575,077	575,077	-	-	-	-	-	-

※ 자료근거 : 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 p.29
②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6. 추경 성립전 우선확정사용 예산(목적지정교부금) 내역」
③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7. 목적지정지원금 중 추경편성 내역」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보통교부금은 5조 7,87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5조 487억 8,800만원) 보다 14.6%, 7,389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21년 7월,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편성분(6조 1,748억 2,000만원)중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되는 7,389억 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증액요청한 것임[7]

〈표 3-2〉 보통교부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5,787,747	5,048,788	738,958	14.6

※ 자료근거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 p.35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7)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665 ('21. 7.29), "2021회계연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
- 서울시교육청 교부액 : 보통교부금 추가편성분(6조 1,748억 2,000만원)중 9.85%, 7,389억 5,800만원

⑵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8]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바,

- 특별교부금 편성액은 기정예산(1,392억 2,000만원) 보다 0.3%, 4억 2,900만원 증액된 1,396억 5,0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9]에 따른 우선확정분(4억 8,6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분(△5,700만원)을 증·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 특별교부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139,650	139,220	429	0.3

※ 자료근거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 p.36

---

8)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9)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우선확정분**(4억 8,600만원)은 ①K-에듀테크스마트고교육성및확산(3억원), ②장애유형별맞춤형교육지원강화(7,000만원), ③학교업무경감기반구축(5,000만원), ④학습자중심교과서지원(5,300만원), ⑤학교감염병관리(1,300만원)를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대한 우선확정분[10]을 반영 요청한 것이며

■ **추경편성분**(△5,700만원)은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과 실제 교부액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5,7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11]

10)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 세부 현황 : 5개 사업, 4억 8,600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우선확정액	우선확정일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	300	7.22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70	7.15
학급자중심교과서지원	53	7.15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50	7.15
학교감염병관리(선제적PCR검사 운영지원)	13	7.15

11) 특별교부금 기정예산-실교부액 차액 조정현황 : 3개 사업, △5,700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실 교부액	기정예산	증감액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0	42	△42
방과후학교활성화	456	466	△10
학습자중심교과서지원	79	84	△5

⑶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표 3-4〉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33,254	33,127	126	0.4

※ 자료근거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 p.38

-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예산(331억 2,700만원) 보다 0.4%,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332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지난 5월,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2]에 따른 우선확정분 4억 8,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 통지[13]에 따라 기정예산액과 변경된 교부액과의 차액 조정을 위한 감액편성분 △3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12)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915 ('21. 5.27), "기초학력지원 '온라인 튜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3)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037 ('21. 5.18), "2021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 통지"

(단위 : 백만원)

시도	'21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안)			
	당초		변경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12,617	8,411	12,256 (△360)	8,171 (△240)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액은 4조 4,06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4조 4,062억 1,500만원) 보다 △1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4,406,102	4,406,215	△113	△0.0	-	127	△240
법정이전수입	4,156,494	4,156,734	△240	△0.0	-	-	△240
지방세 소계	4,020,202	4,020,202	-	-	-	-	-
지방교육세	1,968,541	1,968,541	-	-	-	-	-
시도세	1,772,211	1,772,211	-	-	-	-	-
담배소비세	279,450	279,450	-	-	-	-	-
학교용지부담금	7,386	7,386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4,168	104,168	-	-	-	-	-
교육급여보조금	8,171	8,411	△240	△2.8	-	-	△24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67	16,567	-	-	-	-	-
비법정이전수입	249,608	249,481	127	0.1	-	127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65,012	165,012	-	-	-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4,596	84,469	127	0.1	-	127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 18), 「2-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4조 1,567억 3,400만원) 보다 △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교육부가 교육급여 예산을 변경 통지[14]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분이 감소되어 △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구로부터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을 반영하고자 우선확정분 1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인 바,

- 자치구가 지원한 ①학교복합화 도서관 BTL 원금 및 이자 지원 1억 900만원, ②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400만원, ③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400만원에 대한 우선확정분 1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14)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037 ('21. 5.18), "2021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 통지"

(단위 : 백만원)

시도	'21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안)			
	당초		변경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12,617	8,411	12,256 (△360)	8,171 (△240)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16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162억 5,700만원) 보다 2.6%, 4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3-6〉 기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 감 률
합 계	**16,684**	**16,257**	**427**	**2.6**
민간이전수입	12,406	12,406	-	-
기 부 금	2,770	2,770	-	-
기타지원금	9,636	9,636	-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278	3,851	427	11.1
전 입 금	4,278	3,851	427	11.1

※ 자료근거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안)」, p.49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이전사업[15]을 위해 시·도교육청 분담금[16] 4억 2,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15)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363~365

1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87 ('21. 4.13), "2021년 제3차 특별교부금(학생안전 및 건강-교육환경정보시스템) 지원계획 알림"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274억 8,900만원 보다 △4.2%, △53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20억 9,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①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등 감소분 △1억 3,600만원 ②수련시설 기숙사 및 급식비 감소분 △1억 6,400만원 등, 총 △3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자산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지연[17]에 따른 매각대금수입 감소분 △50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7〉 자체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C/B)
합 계	122,099	127,489	△5,390	△4.2
교수학습활동수입	1,276	1,412	△136	△9.6
행정활동수입	4,737	4,901	△164	△3.3
자산수입	6,802	11,892	△5,090	△42.8
이자수입	7,692	7,692	-	-
금융자산회수	19,191	19,191	-	-
기타수입	82,401	82,401	-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2-5. 자체수입」

17)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98
■ 은평구 수색동 129-2 외 토지매각 관련 수색 7구역 조합과 서울시와의 도로선형 변경 협의 지연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재원 증액 편성액은 7,335억 6,9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분(7,344억 3,800만원)의 99.9%에 해당됨

〈표 4-1〉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증액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지원	교육회복자율사업	42,04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서울형몽실학교	3,000
교육혁신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8,249
	스마트교육지원	AI기반초개인화교육환경조성	16,800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교육력제고	5,186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사업지원	3,235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20,000
	학교도서관운영지원	학교도서관개선지원	15,000
	학력향상지원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키다리샘)	6,940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직업계고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14,625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맞춤형취업기능강화	9,217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관리	전면등교대비방역강화	30,012
	학기중급식비지원	학교급식방역인력인건비	5,000
	학기중급식비지원	학생급식용임시가림판구입	3,226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운영비재정결함보조	4,000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전자칠판설치	27,520
	지방교육채상환	지방채원리금상환	57,795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청사환경개선	4,665
	직속기관시설관리	직속기관및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	6,93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화경개선기금	280,0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개선	215,071

※ 세출예산 증액편성액 30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① 코로나19 교육회복 관련[18] 사업비

❑ 학교운영비 교육회복자율사업

- ■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6)
-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1)

❍ **학교운영비 교육회복자율사업**은 코로나19로 손실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직접교육비, 학교안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460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 ①**학교기본운영비(예산담당관)**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420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고, ②**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4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 학교운영비 교육회복자율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부서	산출 기초 내역		편성액
		지원항목	지원대상	
합계				46,046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담당관	직접교육비, 학교안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자율사업 추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1,251교)	42,046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학교지원과		사립 중·고·특수학교(294교)	4,000

❑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4)

❍ **유아교육 교육력제고**(유아교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①**유치원원격수업운영지원**, ②**유아발달회복지원**에 5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18)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448 ('21. 8. 2),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송부 및 담당자 회의 개최 알림"

- ①**유치원원격수업운영지원**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지원하고자 2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고, ②**유아발달회복지원**은 개별유아의 놀이지원, 인성교육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비 26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19)]

〈표 4-3〉 유아교육교육력제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편 성 내 역
합 계	5,303	117	5,186	
①유치원원격수업운영지원	2,660	117	2,543	· 유치원원격수업 노트북 등 구입 - 150만원×(공·사립 1,695학급)
②유아발달회복지원	2,643	-	2,643	· 시간강사비(공립) - (22,000원×5시간×90일)×267명

- 다만, 비대면 수업을 위한 노트북 지원(유치원원격수업운영지원)과 대면 수업의 지원을 위한 시간강사비 지원(유아발달회복지원)은 상호 상반된 정책수단일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

-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5)
- **초등교원연수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3)
- **중등교원연수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20)

❍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는 코로나19로 소진된 교원의 치유와 회복력 지원을 위해 총 33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 동 사업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급 규모에 따라 연수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20)]

---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유아발달 회복지원 추진 계획(유아교육과)」

〈표 4-4〉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부서	산출 기초 내역		편성액
		지원항목	지원대상	
합계			총 2,124교	3,319
교원연수지원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유아교육과	단위 학교별 연수 운영비 지원	공립 272개원 사립 494개원	331
교원연수지원 (초등교원연수지원)	초등교육과		국·공립 579교 사립 56교	1,333
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육과		국·공립 408교 사립 315교	1,655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여비항목을 약 △30억원 감액 편성 요청[21]한 것과 상반되게 서울시교육청은 대면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연수비 33억 1,900만원을 증액한 바,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한 편성 사례인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학교사업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3)

❍ **방과후학교사업지원**(초등교육과)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사회성 회복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3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청한 것임

〈표 4-5〉 방과후학교사업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지원내역
방과후학교사업지원	11,437	8,202	3,235	· 공·사립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2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유·초·중등교육과)」
○ 유치원 : 학급 규모에 따라 200천원,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차등 지원
○ 초, 중, 고등학교 : 학급 규모에 따라 1,0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차등 지원

2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8p. 세출총괄표

❑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46)

❍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중등교육과)중 **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확대된 기초학력격차를 완화하고자 '토닥토닥 키다리샘'[22] 사업으로 6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 동 사업은 중·고등학교 600교를 대상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키다리샘이 학생들과 팀단위로 학습습관 형성과 정서 상담 등 교육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산 출 내 역
단위학교기본학력 책 임 지 도 제	8,942	2,702	6,240	· 토닥토닥 키다리샘 지원 - 국·공·사립 130만원×8팀×600교

❑ **특수학교 환경개선 관련**

■ **돌봄교실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5)

■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8)

❍ **돌봄교실운영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은 공립 9교(31실), 사립 18교(55실) 총 86실의 특수학교 돌봄교실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개선비 2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은 장애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하여 심리안정실구축 등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23]

---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울 토닥토닥 키다리샘 지원 추진 계획」

■ 키다리샘이란 ?
학기 중 토,일요일, 방학 등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키**워주고 **다**져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 '21년 7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초등 기초학력 키다리샘', 16억 5,000만원 편성

〈표 4-7〉 특수학교 환경개선 관련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출내역
돌봄교실운영지원 (특수학교돌봄교실 종일반운영지원)	2,813	233	2,580	· 공립학교환경개선비 3,000만원×31실 · 사립학교환경개선비 3,000만원×55실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특수학교환경개선)	1,450	-	1,450	· 공립 5,000만원×11교 · 사립 5,000만원×18교

❑ **단위학교상담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07)

❍ **단위학교상담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은 단위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①**Wee클래스구축**, ②**Wee클래스운영**을 위해 21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 ①**Wee클래스구축**은 공·사립 25개교에 위클래스 구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며, ②**Wee클래스운영**은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공·사립 412교에 운영비 16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24)]

〈표 4-8〉 단위학교상담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편성내역
합계	2,648	500	2,148	
Wee클래스구축	1,000	500	500	· 공립 2,000만원×20교 · 사립 2,000만원×5교
Wee클래스운영	1,648	-	1,648	· 공립 400만원×288교 · 사립 400만원×124교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특수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단위학교상담지원(Wee클래스운영) 추진 계획」

❑ **맞춤형취업기능강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25)

❍ **맞춤형취업기능강화**(진로직업교육과)중 **취업기능강화**는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25]으로 ①**취업역량강화** 바우처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자격증[26]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②**실습멘토링** 보조강사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활용하고자 92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취업역량강화**의 경우,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라 4,786명 지원을 위한 11억 9,7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인원을 9,945명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77억 5,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9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27]

- ②**실습멘토링** 지원의 경우, 미배정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제외한 2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된 바, 향후 시·도별 협의를 거쳐 대상인원의 소폭 증가도 발생될 것으로 검토됨[28]

---

25)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868 ('21. 8.10),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알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869 ('21. 8.10),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추진 계획 알림"

26)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함(민간등록자격 제외)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직로직업교육과-8334 ('21. 8. 5), "취업역량강화 바우처 사업 추진 계획(안)"
○ 지원대상 산출근거 : 직업계고 재학생(1개학년)의 80%, 37,299명×1/3×80%=9,945명
<참고> 2021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 수(명)	11,389	12,778	13,132	37,299

28)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868 ('21. 8.10),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알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869 ('21. 8.10),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추진 계획 알림"
-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시·도별 대응 예산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지원인원	대응 예산(1:1)	지원인원	대응 예산(1:1)
서울	4,786	1,197	85(11)	306(40)

※ 실습지원멘토링 미배정 인원(11명) 및 예산(40백만원)은 시도별 협의를 거쳐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표 4-9〉 맞춤형취업기능강화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취 업 기 능 강 화	9,217	-	9,217	· 취업역량강화 89억 5,100만원 - 90만원×9,945명 · 실습멘토링 2억 6,600만원 - 90만원×4개월×74교

❑ **전면등교 대비 코로나19 방역 관련**[29]

- **선진운동부육성**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38)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41)
- **학교감염병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0)
-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66)
- **코로나위기대응급식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69)

❍ **선진운동부육성**(체육건강문화예술과)중 **취약종목지원**은 초·중·고 학교운동부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체육건강문화예술과)중 **코로나19예방 배식대 및 보온고 교체지원**은 초·중·고등학교 등 총 204교에 급식 보온보냉 매식대 및 음식 보온고 교체를 지원하고자 23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감염병관리**(체육건강문화예술과)중 **전면등교대비 방역강화**는 학교방역활동 인건비, 방역소독비 및 방역물품구입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자 300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무상급식**(체육건강문화예술과)중 **인건비**는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교급식 방역인력 인건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4073 ('21. 8. 4),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대비 학교방역 예산 추가지원 종합계획(안)"

❍ **코로나위기대응 급식운영지원**(체육건강문화예술과)중 **학생급식용 임시가림판 구입**은 초·중·고등학교 등 636교에 급식용 임시가림판 설치를 지원하고자 32억원 2,6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0〉 전면등교 대비 코로나19 방역 관련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지원내역
선진운동부육성 (취약종목지원)	4,678	3,768	910	· 방역인력 및 물품 등 지원(9,100명)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코로나19예방배식대 및 보온고교체지원)	2,322	-	2,322	· 급식배식대 및 음식보온고 교체(204교)
학교감염병관리 (전면등교대비방역강화)	30,012	-	30,012	· 방역인력 인건비(교당 4명, 총 6,974명) · 방역소독비(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방역물품 구입비(학급당 13만원)
무상급식 (인건비)	157,118	152,118	5,000	· 학교급식방역인력 인건비(2,411명)
코로나위기대응급식운영지원 (학생급식용임시가림판구입)	3,226	-	3,226	· 학생급식용임시가림판 구입비(636교)

❑ **체육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6)

❍ **체육관리**(체육건강문화예술과)는 **①스마트기반체육활동지원, ②체력회복 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지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19억 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11〉 체육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지원내역
합계	2,138	229	1,909	
스마트기반체육수업지원	829	229	600	· 5,000만원×12교
체력회복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지원	1,309	-	1,309	· 100만원×1,309교

- ①**스마트기반체육활동지원**은 초·중·고등학교 12교에 스마트기반 체육활동이 가능한 설비, 교구 구입 및 공간구축을 하고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 ②**체력회복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지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저체력학생의 체력격차 회복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각 100만원씩 1,309교에 13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30)]

■ 다만, 학생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1개교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①강사비(교당 60만원), ②교구비(교당 20만원), ③인쇄비(교당 20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상학생의 경우에도 ①건강체력평가결과 4~5등급인 학생, ②비만등급이 경도, 고도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오히려 동 사업을 통해 '저체력'이나 '비만'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업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2〉 (예시)서울학생 체력회복 프로젝트 학교별 예산 사용

구 분	산 출 근 거	합 계
강 사 비	30,000원 × 20회 (주2회, 10주 운영)	600,000원
교 구 비	세라밴드 10,000원 × 20개	200,000원
인 쇄 비	신체활동다이어리 10,000원 × 20권	200,000원
계		1,000,000원

※ 자료 근거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울학생 체력회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울학생 체력회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② 미래교육 환경 구축 관련

❑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9)

❍ **생태전환교육내실화**(교육혁신과)중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은 ①농촌유학관련 나이스기능 추가개발을 위한 운영비 1,200만원, ②농촌유학비(전출금) 1억 2,000만원, ③에코그린 교육환경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25억원을 포함한 2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3〉 생태전환교육내실화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지 원 내 역
생 태 전 환 실 천 문 화 확 산	2,978	346	2,632	· 농촌유학나이스기능추가개발 1,200만원 · 농촌유학비 1억 2,010만원(160명) · 에코그린교육공간조성및운영 25억원 - 5,000만원×50교

❑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4)

❍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교육혁신과)은 ①과학교육센터 11개실을 대상으로 AI융합기반 과학교육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4억 4,000만원과 ②초·중·고등학교 등 200교에 실험실 리모델링 등을 추가 지원하고자 과학실험실 환경구축비 8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과학실험지원 AI시스템구축 연구사업이 취소되어 해당예산 2억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4〉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 경 구 축	13,217	4,968	8,249	· 과학교육센터기자재구입 4,000만원×11실 · 과학실험실환경구축 4,000만원×200교 · 과학실험지원AI시스템구축 △2억원 · 운영비 660만원 및 업무추진비 220만원

❑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3)

❍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교육혁신과)중 **AI기반초개인화 교육환경조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의 기회제공 및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초·중·고등학교 150교에 AI교실 공간구축 및 기자재구입비로 학교회계전출금 등 150억원을 편성하고, AI교실이 기 구축된 45교에는 학교회계전출금 등 18억원을 편성하여 기자재 및 교구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확인됨31)

〈표 4-15〉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AI기반초개인화 교 육 환 경 조 성	16,860	30	16,800	· 신나는AI교실구축 150억원 - 1억원×150교 · 신나는AI교실지자재지원 18억원 - 4,000만원×45교

❑ **협력학습참여적 수업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1)

❍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초등교육과)중 **꿈꾸는연구실구축지원**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미래교육에 대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10686 ('21. 8. 4), "「신나는 AI 교실」 운영 계획(안)"

- 교육지원청별로 공모절차를 거쳐 초등학교 5교를 선정하여 총 55교에 미래형 스마트 교사연구실을 구축하고자 1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32)]

〈표 4-16〉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1,873	221	1,652	· 운영비(심사수당) 18만원×11개청 · 학교회계전출금 3,000만원×55교

❑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23)

❍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중등교육과)중 **수업환경개선**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 공·사립 고등학교 100교를 대상으로 이동수업용 사물함 설치, 게시용 모니터 등을 지원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33)]

〈표 4-17〉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수 업 환 경 개 선	20,330	330	20,000	· 공립고 2억원×50교 · 사립고 2억원×50교

❑ **원격교육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26)

❍ **원격교육지원**(중등교육과)중 **블렌디드수업 및 교사연수모형개발**은 혁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자 2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3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18670 ('20.12.10), "2021년 꿈꾸는 연구실 '스마트 하지' 사업추진 기본계획"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4387 ('21. 2. 4), "2021학년도 서울형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안)"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으며,[34] 2022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스마트기기를 1인 1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35]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8만대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통합계약(공동구매)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8월 현재 계약된 결과는 없으나, 9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까지 보급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36]

- 지난 7월,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소요예산의 집행도 지체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내용을 위해 21억 6,700만원을 추가편성 필요한 사안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8〉 원격교육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블렌디드수업및 교사연수모형개발	62,331	60,164	2,167	· 혁신고 1학년 학생 및 교원 스마트기기 지원 - (61만원×3,232명)+(500만원×2학급×14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43)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중등교육과)중 **학교도서관개선지원**은 초·중·고등학교 1,000교에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37]를 구축하고자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34)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84p.
- 원격교육지원(스마트기기지원) 중학교 1학년 학생(88,097명) 및 교원(3,140학급), 총 600억 8,300만원

3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10722 ('21. 8. 5),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고 학습 환경 지원 계획(안)"

3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7289('21. 5.18), "코로나19이후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학습환경 지원계획"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2. 신규 증액편성사업 사업계획서, 학교도서관개선지원 추진 계획」
○ 학교 도서관 자동화 장비 : 무인대출반납기, 분실방지게이트, 감응제거재생기, 도서검색대, 청구기호출력기, 장서점검기 등

〈표 4-19〉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학교도서관개선지원	15,037	37	15,000	· 공립 1,500만원×750교 · 공립 1,500만원×250교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22)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진로직업교육과)중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은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따라 연구·선도학교에 학점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14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바,

- ①**직업계고 학점제 실습환경구축**은 전문교과 수업 운영에 필요한 실습실을 102학과에 구축하고자 38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 ②**공동실습소개편**은 경기기계공업고 및 서울공업고 부설 기계공동실습소에 스마트팩토리시스템[38], 실습실 리모델링, 온라인 실습실 및 학생휴게실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6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③**NCS학습모듈**[39]**스마트기기보급**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1, 2학년 학생 2만 4,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자 48억원을 편성 요청하여 제출한 것임

---

38)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8145 ('21. 8. 2),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환경 구축 지원 계획"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공간 구축

구분	내용
제품제작실	· 공장자동화시스템 구축 · 재료 이송, 제품 생산, 물류 처리, 보관에 필요한 장비 설치 · 제품 검사 및 불량 판별 시스템
빅데이터 관제실	· 전체 공정 데이터 수합 및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16명 수용 테이블 설치
강의실	· 26명 수용 스마트팩토리 러닝용 디지털 시스템 구축
시제품설계실	· 제품설계 및 시제품 가공을 위한 3D프린터 설치

3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8145 ('21. 8. 2),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환경 구축 지원 계획"

〈표 4-20〉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직업계고학점제 연구선도학교운영	15,019	394	14,625	· 직업계고학점제실습환경구축 - 3,750만원×102학과 · 공동실습소개편 - 300만원×2개소 · NCS학습모듈스마트기기 보급(1,2학년) - 20만원×24,000명

❑ **물품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00)

❍ **물품관리**(교육재정과)중 **전자칠판설치**는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사립 중학교 1학년, 2,752학급에 전자칠판을 지원하고자 275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향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확인됨40)

〈표 4-21〉 물품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전자칠판설치	27,520	-	27,520	· 전자칠판설치(공·사립중학교 1학년) - 1,000만원×2,752실

NCS 학습모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이며, 전문교과Ⅱ 실무과목(고시 외 과목 포함)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제17조 2항」에 따라 NCS 학습모듈을 교재(교과서)로 사용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제17조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수 있다.

4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4767 ('21. 8.10),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안)"

③ 인건비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및 교육공무직원인건비

-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8)
-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7)

❍ **계약제근로자인건비**중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은 기존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 및 권고 중심의 내부방침[41]을 지난 7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42]으로 변경·강화함에 따라

-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645개 기관 및 학교에 장애인 1인을 의무고용하고자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3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18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함에 따라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지난 6월, '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43]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44],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수립된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한 자체 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사료됨

---

4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1402 ('20. 2.21), "2020년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 및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알림"
4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4767 ('21. 7.21),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 알림"
4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 장애인고용률 3.26%)
44)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록 ('21. 6.23),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표 4-22〉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4,972	23,172	1,800	7.8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1,615	11,615	-	-	
장애인고용 의무제관련운영	13,357	11,557	1,800	15.6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기관에 교부할 인건비 증액 36억 1,200만원 - 140만원×4개월×645기관(학교)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감액 - △18억 1,2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4-1. 인건비 편성현황」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①코로나19 백신접종 공가·병가 사용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20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②퇴직·신규 채용·연장근로 등 인력 운용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1,3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교육공무직원인건비	426,572	424,540	2,032	0.5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359,090	357,045	2,045	0.6	·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대응 특별휴가 대체인력 수요 증가 및 특별연장근로 수요 반영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44,883	44,883	-	-	
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2,883	12,896	△13	△0.1	· 퇴직·신규 채용·연장근로 등 인력 운용 변동 반영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미대상자 법정부담금 감액
맞춤형복지비	9,715	9,715	-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4-1. 인건비 편성현황」

④ 시설사업비 추가 예산 소요사업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시설사업비[45]는 기정예산(8,322억 7,200만원)보다 5,15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전액 일반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됨

- 금번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시설사업비 5,15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불용액을 감소시키고자 △105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요예산 부족분 및 긴급성 등의 사유로 5,263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24〉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추 경 예 산 안	재 원 구 분
832,372	515,819	1,348,091	· 일반재원 515,819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개요」, p.15

45) 시설사업비 내역
-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 교실증축
- 일반시설 :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 급식시설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 **학교신증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7, p.391)

❍ **학교신설**의 경우, 고산초병설유를 포함한 4개교[46]에 건설비, 학교회계전출금 등 신설경비 부족분 3억 2,7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증액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25〉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114,846	114,399	447	0.4	327	-	120 주 1)

※주1) 기 편성된 기타지원금(KB금융그룹기부금)중 영동초병설유(교실증축비) △1억 2,000만원 감액 → 고산초병설유(학교신설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

❍ **교실증축**의 경우, (가칭)청파유를 포함한 5개교[47]에 대한 시설비와 내부비품비 23억 9,2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하고, 일부 감액 조정요청한 것임

〈표 4-26〉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24,672	22,400	2,272	10.1	2,392	-	△120

46)「학교신설비 증액 편성현황」
- 공립유(4개원) : (남부)고산초병설유, (북부)상원초병설유, 용동초병설유, (강동송파)(가칭)거암유

47)「교실증축비 증액 편성현황」
- 공립유(2개원) : (중부)(가칭)청파유, (강남서초)개포유
- 초(2개교) : (서부)한서초, (강남서초)도성초
- 중(1개교) : (강동송파)명일중

- **도성초**[48]의 경우,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한시적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모듈러 교실[49] 설치 소요액(21억 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50]에 따라 결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이 30억 3,300만원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51]에 따라 당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 지난 8월 11일, 사업부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52]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소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53]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8) (강남서초)도성초 : 강남구 역삼로313

49) 모듈러 교실(임시형 교사)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단순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로,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중 임시교사로 주로 사용됨

5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5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중략)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5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2103 ('21. 8.11),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출"

53) (안건번호 27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분	사 업 명	재산구분	면 적	기 준 가 액
증 축	서울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증축	건물	1,211.0m^2	30억 3,300만원

❑ **일반시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46, p.449, p.451, p.471)

❍ **학교시설증개축**중 일반재원으로 증액요청된 **강당 겸 체육관 증축**(29억 4,800만원)의 경우,

- 금산초를 포함한 8개교[54]에 대해 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분 편성, 연도 내 준공을 위한 내부비품비 등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강당겸체육관 증축사업은 통상 공사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배정시점이 하반기일 수 밖에 없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회계연도중 추가편성된 예산액에 대한 집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의 경우, 증액요청된 ①노후시설개선(2,150억 7,100만원), ②그린스마트스쿨(1억원), ③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적립(2,8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해당 시설의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대규모 재원의 투입은 필요하나 추경예산의 편성 및 실제 교부시점,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면 결산시점에 대규모 이월은 물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수 밖에 없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4) 강당겸체육관 증축비 증액 편성내역
- 초(5개교) : (남부)금산초, (북부)공연초, 선곡초, 승미초, 중계초
- 중(2개교) : (남부)대영중, (북부)노일중
- 고(1개교) : (강서양천)동양고

〈표 4-2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지원금(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547,447**	**1,042,618**	**495,171**	**495,171**	**-**	**-**
노후시설개선	488,167	703,238	215,071	215,071	-	-
그린스마트스쿨	3,789	3,889	100	100	-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적립	38,411	318,411	280,000	280,000	-	-
디자인혁신사업 등	17,080	17,080	-	-	-	-

- **노후시설개선**은 동대부고 시청각실 보수 및 개선공사를 포함한 253개 물량에 대해 16개 세세부사업[55] 2,150억 7,100만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5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내역
- 교육환경개선사업(11개) :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
- 안전관련 노후시설개선(4개) :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정밀점검
- 장애인편의시설(1개)

〈표 4-28〉 노후시설개선 사업내역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기정예산	(추경안) 물 량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일반재원(A)		목적지정지원금(B)	
				금액	구성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88,167**	**253**	**215,071**	**215,071**	**100.0**	-	-
화 장 실 개 선	28,810	13	1,136	1,136	0.5	-	-
전 기 시 설 개 선	18,880	15	695	695	0.3	-	-
냉 난 방 개 선	37,327	16	1,566	1,566	0.7	-	-
창 호 개 선	20,634	7	△65	△65	△0.0	-	-
외 벽 개 선	21,668	2	△114	△114	△0.1	-	-
소 방 시 설 개 선	8,540	8	△28	△28	△0.0	-	-
방 수 공 사	32,622	18	257	257	0.1	-	-
바 닥 개 선	15,193	5	△662	△662	△0.3	-	-
도 장 공 사	3,327	3	△152	△152	△0.1	-	-
외 부 환 경 개 선	5,072	8	883	883	0.4	-	-
기 타 사 업	136,185	106	208,300	208,300	96.9	-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19,757	4	△444	△444	△0.2	-	-
안 전 관 리 (내 진 보 강)	22,014	1	52	52	0.0	-	-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26,485	6	1,612	1,612	0.7	-	-
안전관리(샌드위치판넬제거)	2,601		-	-	-	-	-
안 전 관 리 (석 면 제 거)	63,689	8	△563	△563	△0.3	-	-
안 전 관 리 (정 밀 점 검)	25,363	33	2,598	2,598	1.2	-	-

■ 노후시설개선중 **기타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속하지 않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거여초 교육시설개선 등 기관별 환경개선 50건과 향후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예정인 5개 사업[56]을 포함하여 2,083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노후시설개선중 기타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344,485	136,185	208,300	153.0	208,300	-	-

■ 기타사업중 학교관리실 환경개선사업은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무실 및 행정실 등 관리실 1실당 4,000만원, 총 2,493실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 997억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57]

〈표 4-30〉 기타사업 주요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비고
학교관리실환경개선	1,037,000	4,000	99,700	2,493실×4,000만원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54,000	12,000	42,000	525교×8,000만원
학생용노후책걸상교체	43,685	-	43,685	436,8596조×10만원
사물함교체	20,000	-	20,000	200,000개×10만원

※ 사업항목 “기타사업”중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56) 사업단위로 편성한 기타사업 내역(5개)
- 사물함교체,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학생용 노후 책걸상교체, 사물함 교체, 특수학급환경개선

57) 교육시설안전과-8258 (’21. 8.10), “2021년 학교관리실(교무실·행정실)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안)”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58]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기정예산(384억 1,100만원) 대비 729.0%, 2,800억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 동 기금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련 기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인 것으로, 당해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편성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확인됨[59]

■ 동 사업비 전출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재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재원은 안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나,

■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당해 연도 재원을 회계연도가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이월·불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바,

■ 당해 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물량 해소와 기금조성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2조(기금의 설치)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 (안건번호 272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 수지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교특전입금	이자	계	예치금	내역	
기 정	38,459	38,411	48	38,459	38,459	그린스마트스쿨	38,459
변 경	318,637	318,411	226	318,637	318,637	그린스마트스쿨 교육시설환경개선	88,491 230,145
증 감	280,178	280,000	178	280,178	280,178	그린스마트스쿨 교육시설환경개선	50,032 230,145

〈표 4-31〉 기금전출금의 회계간 전출·전입 흐름

(단위 : 백만원)

(전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사업항목1	사업내역	금회 추경증감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적립	
			280,000

(전입)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관	항	목	금회 변경액
전입금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80,000

❍ **교육지원청시설관리**의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건설비(9억 8,000만원)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50억 8,300만원)보다 91.8%, 46억 6,4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⑵ 목적지정재원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재원은 8억 6,900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7,344억원)의 0.1%에 해당함

〈표 4-32〉 목적지정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 성 재 원	증 감 액
합 계		869
① 우 선 확 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전입금	1,527
② 차 액 조 정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	△658

①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 목적지정재원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사업은 12건, 15억 2,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60] 및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중 예산총칙[61]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추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6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6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p.3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표 4-33〉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12	1,527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5	486
	국고보조금	1	487
자치단체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	127
기타이전수입	전입금	1	427

❍ **온라인튜터(국고보조금)**[62](초등교육과)는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튜터(두리샘21)를 지원하는 사업[63]으로 국고보조금 4억 8,7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K-에듀테크스마트고교육성및확산(특별교부금)**[64](중등교육과)은 고교학점제 선도고등학교를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우선확정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교육환경정보시스템통합및클라우드이전**[65](체육건강문화예술과)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사업으로 전입금 4억 2,7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62)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9

63)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1716 ('21. 3.26), "온라인튜터 지원 사업계획"

· 두리샘21(온라인튜터) 업무
- (필수업무)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대면 보충지도, 지도자료 등 준비, 과제관리·피드백, 학습·정서 등 멘토링, 교원 등과 협의, 활동사항 보고
- (기타업무, 예시) 지원학생 등이 포함된 수업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방학 중 기초학력 지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한 교육지원 등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등

64)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40

65)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63

〈표 4-34〉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국 고 보 조 금	학 력 향 상 지 원	온라인튜터(국고보조금)	487
특 별 교 부 금	특 색 교 육 과 정	K-에듀테크 스마트 고교 육성 및 확산	300
특 별 교 부 금	특 색 교 육 과 정	학교업무경감기반구축	50
특 별 교 부 금	특 색 교 육 과 정	학습자중심교과서지원	53
특 별 교 부 금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장애유형별맞춤형교육지원강화	70
특 별 교 부 금	학 교 보 건 관 리	학교감염병관리	13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평 생 학 습 운 영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4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 원금 및 이자	109
전 입 금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이전	427

※ 우선확정액 10백만원 이상으로 한정함

② 목적지정재원 차액조정

❍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목적지원금 포함)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66]하고, 회계연도중 감교부 통지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67]한 바 있으나,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내시액을 감액통지함에 따라 목적지정재원의 예산편성액과 당해연도 실제교부액간 차액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개 사업, △6억 5,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출한 것임

〈표 4-35〉 목적지정재원 차액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역	기정예산 편성액	교부액	차액 조정액
합 계 (4 건)			21,161	20,503	△658
국고보조금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12,617	12,256	△36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888	5,720	△168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523	2,451	△72
특별교부금	특색교육과정	학습자중심교과서지원	31	26	△5
특별교부금	국제교육문화 교육협력지원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42	-	△42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활성화	60	50	△10

6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p.35
■ 목적지정 외부재원 2021년도 예산 편성 현황 : 158개 사업, 7,106억 2,500만원

67)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개요」, p.9

⑶ 기타

❑ **지방채원리금상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09)

❍ **지방채원리금상환**은 기정예산(2,648억 5,400만원) 보다 577억 9,500만원 증액된 3,226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4-36〉 지방채원리금상환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322,649**	**264,854**	**57,795**	**21.8**
원금상환	313,669	256,665	57,004	22.2
이자상환	8,980	8,189	791	9.6

- **원금상환**의 경우, '16년도에 발행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570억 400만원을 상환하고자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68]

- **이자상환**의 경우,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해 추가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7억 9,100만원을 지급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 상환계획의 변경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69]에서 '중기

---

68)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72

69)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지방채 상환액 2,648억 5,400만원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조기상환 577억 9,500만원을 포함한 총 3,226억 4,900만원의 지방채 상환계획이 반영된 「2021년~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70]

-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통해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71]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채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표 4-37〉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및 사유	원금현황		원리금상환현황				상환잔액
	발행액	’20년도말 잔액 (A)	’21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안 (D)	계 (E=B+C+D)	
합계	486,177	316,177	15,553	249,301	57,795	322,649	-
’15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98,763	12,117	89,881	-	101,998	-
’16교육환경개선	217,414	217,414	3,436	159,420	57,795	220,651	-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4515(’21. 7.12)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통보”

---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 제2항 ·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7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 p.42
■ ’21년도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 3,226억 4,900만원 (’22년도 이후 지방교육채 잔액 0원)

7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665 (’21. 7.29), “2021회계연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
■ (지방채 상환)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적정 규모의 지방채 상환 검토

< 2021 정부 추경 국회 검토보고서 지적 내용 >
-(교육위) 추경·정산분 등 추가 재원 발생 시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예정처) 교부금 추경 예산을 지방채 상환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 **업무추진비 편성 관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4)

❍ **업무추진비**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72] 등을 편성하는 세출과목임

-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73]은 예산규모의 0.09% 이내로 업무추진비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의 0.04%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38〉 업무추진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편성액	편성비율
기정예산	10,849,193	4,549	0.04
추경예산안	11,583,631	4,539	0.04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퇴직교원인생2모작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등 17건, △3,800만원을 감액하고,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관련 업무추진비 10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청함

---

72)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8. 3.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7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 서울·경기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제주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다만, 편성 요청된 업무추진비중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교육혁신과)의 경우, 기존 사업에 11개 교육지원청별 과학교육센터의 기자재 도입(센터당 4,000만원)이 추가편성됨에 따라 선정심사협의회비(센터당 2회분) 22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표 4-39〉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업무추진비 등 편성현황

(단위 : 천원)

편 성 목	사 업 내 역	산 출 근 거	편 성 액
운 영 비 (210)	선정심사위원수당	5만원×4명×22회	4,400
업 무 추 진 비 (230)	선정심사협의회비	2만원×5명×22회	2,200

※ 자료근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p.155

- 사업내역 추가편성에 따른 부대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요청한 사례로 사료되나, 제출된 사업내역중 '협의회비'는 특정한 실체가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아닌 관련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세출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74)]

- 동 업무추진비 편성 사례는 기자재 선정심사에 따른 수당(440만원)에 더하여 협의회비(220만원)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라 할 수 있는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편성 사례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한 방역지침을 선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행정기관에서 5인 기준의 식사제공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4) 서울시특별교육청, 예산담당관-6998 ('21. 8.24),「2.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편황」

〈표 4-40〉 업무추진비 증액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비 고
합 계		32,000	6,500	25,500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제교류일반업무	7,400	4,400	3,000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	2,800	600	2,200	
장애유형별맞춤형 교육지원강화(특별교부금)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3,000	-	3,000	우선확정분
학습자중심교과서지원 (특별교부금)	자유발행제시범사업	3,500	1,500	2,000	우선확정분
학교감염병관리 (특별교부금)	교육시설이동검체팀 PCR검사사업	400	-	400	우선확정분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지원체제구축및워크숍	6,600	-	6,600	신규사업
원격교육지원	블렌디드수업 및 교사연수모형개발	5,500	-	5,500	신규사업
초등교원연수지원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	1,200	-	1,200	신규사업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일제잔재청산지원	1,000	-	1,000	신규사업
취업지원센터운영	특색사업운영	600	-	600	신규사업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감액편성 요청액은 총 △873억 3,900만원으로 목적지정재원 차액조정액 △6억 5,800만원을 제외한 △866억 8,100만원은 일반재원에서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1〉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증 감 액 (A-B)	증 액			감 액		
	소 계 (A)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소 계 (B)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734,438	821,776	820,249	1,527	△87,339	△86,681	△658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 사업별 증감 현황」

❍ 10억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 감액편성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40억원 등 7건을 제출한 바,

〈표 4-42〉 세출예산 감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감 액	감액률	감 액 사 유
학교지원과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151,909	1,185,909	△34,000	△3.0	인건비 불용예상액
예산담당관	공무원 법정부담금	796,722	816,722	△20,000	△2.4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예상 납부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상액
예산담당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0,530	33,895	△13,365	△39.4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 반영에 따른불용예상액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감 액	감액률	감 액 사 유
교육재정과	기타기금적립	6,312	11,403	△5,090	△44.6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금 감액
중등교육과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28,800	30,800	△2,000	△6.5	상·하반기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지원	36,888	38,646	△1,757	△4.5	사립유치원 휴·폐원 등으로 인한 교원수 감소 반영
교육연구정보원	정품SW라이센스 임대	11,235	12,400	△1,165	△9.4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 10억원 이상 감액편성한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841 ('21. 8.18), 「3-3. 사업별 증감 현황」

❍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학교지원과)의 경우, 기정예산(1조 1,859억 900만원) 대비 △3.0%, △34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지난 5~6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신청결과, '21년도 지원대상 사립학교의 교직원 정원(△158명) 및 현원 감소(△449명)[75]로 인하여 인건비 신청액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75)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5
■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대상학교 연도별 교직원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교원		사무직원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0	14,515	11,268	1,421	1,396	정원대비 총 △158명 현원대비 총 △449명
2021	14,358	10,826	1,420	1,389	
증감	△157	△442	△1	△7	

❍ **법정부담금**(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8,167억 2,200만원) 대비 △2.4%, △200억원, **명예퇴직수당**(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338억 9,500만원) 대비 △39.4%, △133억 6,500만원,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중등교육과)은 기정예산(308억원) 대비 △6.5%, △20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총 △353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21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수당 소요액 감소분을 반영하고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76]

- 다만, 세출예산의 과부족편성을 방지하고자 일정규모의 인건비 초과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본예산 편성당시 인건비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오용하는 사례로 오인될 수 있어

- 서울시교육청은 세출예산 편성시 정밀한 소요액 추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중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확보하는 예산편성·운영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기타기금적립**(교육재정과)은 기정예산(114억 200만원) 대비 △44.6%, △50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공유재산 처분 지연[77]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요청된 것으로 확인됨[78]

---

76)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5
■ 법정부담금 : 명예퇴직자 감소 현황을 반영한 퇴직수당부담금 불용예상액 감액
■ 명예퇴직수당
- 교원 : 2021년 8월말 퇴직예정자(175명) 확정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 지방공무원 : 최근 3년간 집행 추이 및 상반기 퇴직 현황을 반영한 불용예상액 감액

77)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98
■ 은평구 수색동 129-2 외 토지 매각 관련 수색 7구역 조합과 서울시와의 도로선형 변경 협의 지연

78) (의안번호 2721)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일 '21. 8.11)

Ⅴ.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지방재정법」[79]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계획서**도 같은 법[80]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81]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이 '21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7월, 1조 1,072억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344억원이 증액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된 바,

- 당초 의결된 '21년도 본예산의 성과관리 대상사업[82]의 예산규모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기존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추가경정예산과 불일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

79)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8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1)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본문 생략)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 p.7
■ 성과관리 대상사업 : 2조 3,026억 2,500만원 (23.6%)
■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 7조 4,393억 6,800만원 (76.4%)

규모와 사업내역의 변동을 반영하여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여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연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1년~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83]을 제출하여 사업규모의 변동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고려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 위원회는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상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회계연도중 예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성과계획서 등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84]

- 서울시교육청은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절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 pp.28~34
다. 중기 재정지출 전망
■ 2021년 재정지출 전망액 : 11조 6,220억 8,300만원
(당초 대비 1조 4,161억 4,700만원 증가액 반영)

8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 7.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p.50

Ⅵ. 참고자료

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11,583,632	100.0	10,849,194	734,438	6.8	733,568	1,527	△658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787,747	50.0	5,048,788	738,958	14.6	738,958	-	-
	특별교부금		139,650	1.2	139,220	429	0.3	-	486	△57
	증액교부금		176,710	1.5	176,710	-	-	-	-	-
	국고보조금		33,254	0.3	33,127	126	0.4	-	487	△361
	특별회계전입금		575,077	5.0	575,077	-	-	-	-	-
	계		6,712,439	57.9	5,972,924	739,514	12.4	738,958	973	△418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968,541	17.0	1,968,541	-	-	-	-	-
		시도세	1,772,211	15.3	1,772,211	-	-	-	-	-
		담배소비세	279,450	2.4	279,450	-	-	-	-	-
		학교용지부담금	7,386	0.1	7,386	-	-	-	-	-
		교부금보전금	104,168	0.9	104,168	-	-	-	-	-
		교육급여보조금	8,171	0.1	8,411	△240	△2.9	-	-	△24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67	0.1	16,567	-	-	-	-	-
		소계	4,156,494	35.9	4,156,734	△240	△0.0	-	-	△24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165,012	1.4	165,012	-	-	-	-	-
		기초자치단체	84,596	0.7	84,469	127	0.2	-	127	-
		소계	249,608	2.2	249,481	127	0.1	-	127	-
	계		4,406,102	38.0	4,406,215	△113	△0.0	-	127	△240
기타이전수입			16,684	0.1	16,257	427	2.6	-	427	-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76	0.0	1,412	△136	△6.4	△136	-	-
	행정활동수입		4,737	0.0	4,901	△164	△3.3	△164	-	-
	자산수입		6,802	0.1	11,892	-	-	-	-	-
	이자수입		7,692	0.1	7,692	-	-	-	-	-
	금융자산회수		19,191	0.2	19,191	-	-	-	-	-
	기타수입		82,401	0.7	82,401	△5,090	△9,7	△5,090	-	-
	계		122,099	1.1	127,489	△5,390	△5.5	△5,390	-	-
지방교육채			-	-	-	-	-	-	-	-
전년도이월금			326,309	2.8	326,309	-	-	-	-	-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11,583,632	100.0	10,849,194	100.0	734,438	6.8	733,569	1,527	△658
유아및초·중등교육	10,811,316	93.3	10,165,333	93.7	642,181	6.3	641,397	1,400	△616
인적자원운용	5,074,712	43.8	5,111,967	47.1	△26,539	△0.5	△26,539	-	-
교수-학습활동지원	713,635	6.2	598,091	5.5	111,271	18.6	110,316	960	△5
교육복지지원	1,438,205	12.4	1,423,801	13.1	14,404	1.0	15,015	-	△611
보건/급식/체육활동	171,412	1.5	137,564	1.3	33,509	24.4	33,069	440	-
학교재정지원관리	2,174,388	18.8	2,165,690	20.0	8,697	0.4	8,697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238,964	10.7	728,220	6.7	500,839	67.8	500,839	-	-
평생·직업교육	32,344	0.3	32,108	0.3	236	0.7	218	18	-
평생교육	31,484	0.3	31,188	0.3	296	0.9	278	18	-
직업교육	860	0.0	920	0.0	△60	△6.5	△60	-	-
교육일반	634,622	5.5	547,556	5.0	91,883	16.8	91,816	109	△42
교육행정일반	141,027	1.2	118,804	1.1	22,223	18.7	22,265	-	△42
기관운영관리	68,055	0.6	56,299	0.5	11,756	20.9	11,756	-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25,540	3.7	372,453	3.4	57,904	15.5	57,795	109	-
예비비	105,350	0.9	104,197	1.0	138	0.1	138	-	-
예비비및기타	105,350	0.9	104,197	1.0	138	0.1	138	-	-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11,583,632	100	10,849,194	100.0	734,438	6.8	733,569	1,527	△658
인건비	계	6,299,025	54.4	6,364,558	58.7	△65,533	△1.0	△65,533	-	-
	공무원인건비	4,308,707	37.2	4,342,430	40.0	△33,723	△0.8	△33,723	-	-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인건비	732,971	6.3	728,781	6.8	4,190	0.6	4,190	-	-
	사립학교인건비	1,257,347	10.9	1,293,347	11.9	△36,000	△2.8	△36,000	-	-
경상비	계	948,681	8.2	903,828	8.3	44,853	5.0	44,853	-	-
	기관운영비	31,639	0.3	31,485	0.3	154	0.5	154	-	-
	학교운영비(사립포함)	917,042	7.9	872,343	8.0	44,699	5.1	44,699	-	-
사업비	계	3,805,035	32.8	3,107,959	28.6	697,076	22.4	696,316	1,418	△658
	교육사업비	2,456,944	21.2	2,275,687	20.9	181,257	8.0	180,497	1,418	△658
	시설사업비	1,348,091	11.6	832,272	7.7	515,819	62.0	515,819	-	-
자방채 및 BTL상환	계	425,541	3.7	367,637	3.4	57,904	15.8	57,795	109	-
	지방채상환	322,702	2.8	264,907	2.5	57,795	21.8	57,795	-	-
	BTL 상환	102,839	0.9	102,730	0.9	109	0.1	-	109	-
예비비 및 기타		105,350	0.9	105,212	1.0	138	0.1	138	-	-

4. 일반재원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합계 (149건)				785,608
1	대변인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설명및언론홍보활동	△10
2	감사관	감사관리	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200
3		감사관리	시민감사관운영	△150
4	정책안전기획관	교육행정기록물관리	통계서비스운영	△23
5		학생생활지도지원	안전교육강화	30
6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358
7		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80
8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12,311
9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13,110
1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41
1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1,886
12		교육지원청운영	교육지원청기본운영비	△91
13		본청운영	본청부서운영비	△21
14		제지출금등	반환금	138
15		지방공무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319
16		지방공무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1,054
17		지방공무원인건비	법정부담금	△5,004
18		직속기관운영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58
19		직속기관운영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209
20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42,046
21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타운영비	△1,347
22		행정개선활동지원	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	△67
23		행정개선활동지원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	422
24		행정개선활동지원	평생교육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	△125
25	행정관리담당관	정보보안관리	정보화기획	54
2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242
27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142
28		교육복지우선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	3,739
2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업무추진	118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30	참여협력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104
3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관련사업	△559
32	노사협력담당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1,800
3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교육공무직원통합인건비	2,045
34		교육공무직원인건비	행정기관교육공무직원인건비	△13
35		교직원단체관리	공무원노사관리	△115
36		교직원단체관리	교원노사관리	△210
37		교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노사관리	4
38		근로자인사관리	교육공무직노무관리	△8
39	교육혁신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생태전환교육내실화	2,500
40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수학교육지원	200
41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8,249
42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몽골교육정보화지원	△81
43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지원	△50
44		스마트교육지원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16,800
45	유아교육과	교원연수지원	유치원교원연수지원	331
46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1,757
47		유아교육지원	공립유치원운영지원	△73
48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교육력제고	5,186
49		유아교육지원	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안전지원	△10
50	초등교육과	교원연수지원	초등교원연수지원	1,364
51		교원인사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	△15
52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178
53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사업지원	3,235
54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활성화	△10
55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1,652
56	중등교육과	교실수업개선지원	수업혁신기반구축	1,000
57		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1,655
58		교육과정운영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20,000
59		스마트교육지원	원격교육지원	2,167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60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제2외국어교육활동지원	△6
61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560
62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제2외국어원어민보조교사운영	△55
63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교원명예퇴직수당	△2,000
64		학교도서관운영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15,000
65		학력향상지원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6,940
66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220
67		도서관운영지원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222
68		평생학습운영지원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	20
69		평생학습운영지원	정보소외계층프로그램지원	△25
70		평생학습운영지원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159
7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과정운영	역사교육활성화지원	14
72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학생지원	99
73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005
74		특수교육운영	돌봄교실운영지원	2,580
75		특수교육운영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1,450
76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안전망구축	150
77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대책	△600
78		학생상담활동지원	단위학교상담지원	2,148
79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센터운영	△134
80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자치활동활성화	200
81	행정관리담당관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60
82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14,625
83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맞춤형취업기능강화	9,217
84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취업지원센터운영	480
8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지원	229
86		체육육성종목지원	선진운동부육성	910
87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322
88		학교보건관리	정신건강관리	85
89		학교보건관리	학교감염병관리	30,009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9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관리	1,909
91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59
92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5,000
93		학기중급식비지원	코로나위기대응급식운영지원	3,226
94		학생수련활동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교육	△10
95	학교지원과	시설사업관리	교육공간총괄기획	△323
96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4,000
97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4,000
98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2,272
99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446
100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기타기금적립	△5,090
101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물품관리	27,520
102		재무회계관리	학교배상책임공제회	△18
103		재무회계관리	학교안전공제회지원	△87
104		지방교육채상환	지방채원리금상환	57,795
105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청사환경개선	4,665
106		시설사업관리	건축공간정책	100
107		시설사업관리	건축시설관리일반	452
108		시설사업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29
109		시설사업관리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	30
110		직속기관시설관리	직속기관환경개선	3,295
111		직속기관시설관리	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	3,641
112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부분)	589
113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전면)	971
114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503
11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80,000
11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100
11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208,301
11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냉난방개선	1,566
11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도장공사	△152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12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바닥개선	△662
12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방수공사	257
12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소방시설개선	△28
12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내진보강)	52
1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1,612
12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563
12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정밀점검)	2,599
12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114
12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883
12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444
13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695
13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창호개선	△65
13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전면)	1,136
133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2,949
134	과학전시관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과학탐구활동지원	△17
135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학교홈페이지구축운영	190
136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육연구개발지원	51
13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시스템운영	△132
138		정보보안관리	시스템운영	△30
139		정보보안관리	정보화관리	143
140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정품SW라이센스임대	△1,165
141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자격연수	△14
142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20
143		유아교육지원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33
144		학교평가관리	유치원평가	△34
145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365
146		학교보건관리	학교보건사업지원	35
147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교육요원및조리종사원관리	△1
148	학생체육관	체육대회지원	학교스포츠클럽지원	△16
149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연수지원	△188

5. 목적지정재원중 우선확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우선확정일
	합 계 (12건)		1,527	
국 고 보 조 금	학 력 향 상 지 원	온 라 인 튜 터 (국 고 보 조 금)	487	7.23
	소 계 (1건)		11,909	
특 별 교 부 금	특색교육과정운영	학 습 자 중 심 교 과 서 지 원 (자 유 발 행 제 시 범 사 업 운 영)	53	7.15
	특색교육과정운영	학 교 업 무 경 감 및 효 율 화	50	7.15
	특색교육과정운영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	300	7.22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장 애 학 생 행 동 중 재 지 원	70	7.26
	학 교 보 건 관 리	학 교 감 염 병 관 리 (선제적 PCR검사 운영 지원)	13	7.15
	소 계 (5건)		486	
기 초 자치단체 전 입 금	도 서 관 운 영 지 원	한 도 서 관 한 책 읽 기	2	7.15
	도 서 관 운 영 지 원	한 도 서 관 한 책 읽 기	2	7.15
	평생학습운영지원	성 인 문 해 교 육 지 원	4	7.21
	평생학습운영지원	성 인 문 해 교 육 지 원	10	7.21
	민간투자사업상환	B T L 원 금 , 이 자	109	7.21
	소 계 (5건)		127	
전 입 금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정보시스템통합및클라우드이전	427	7.21
	소 계 (1건)		427	